

입법예고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

1. 개정이유

농촌을 관할하는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농촌 특화지구계획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799호, 2026. 6. 16. 공포, 12.17.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치구 구청장에 대한 농촌공간계획 관련 권한 부여(안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26조, 안 제23조의2 신설)

법 개정으로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농촌 특화지구의 지정, 주민제안 처리, 주민협정 인가 등의 업무 주체에 구청장을 추가함.

나. 농촌특화지구계획의 수립·변경 및 승인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신설)

법 개정으로 농촌특화지구계획이 신설됨에 따라, 농촌특화지구계획의 수립·변경 및 승인에 관하여 승인 시 필요한 서류, 계획 변경 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계획 공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다. 농촌특화지구 지정 해제 절차 규정 신설(안 제9조)

법 개정으로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해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계획수립

권자가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 해당 지구의 위치·면적 등과 해제 사유를 고시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지정 해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라.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 구성·운영 규정 신설(안 제20조 신설)

법 제32조제3항에서 위임한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되,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농업·농촌·토지 분야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하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심의회는 이 영 시행일부터 4년간 존속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법 제7조제4항”을 “법 제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7조제5항”을 “법 제7조제6항”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제5조제3항”을 “제5조제3항 각 호, 제7조제2항”으로, “제7조제3항”을 “제7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광역시장”을 각각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5호 중 “광역시장”을 각각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4항) 중 “법 제11조제3항”을 “법 제11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하고, 제17조를 제18조로 하며,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6조 및 제17조로 하고, 제14조를 제15조로 하며, 제10조부터 제1

3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9조를 제10조로 하며,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7조의2를 제8조로 하며,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농촌특화지구계획의 수립·변경 등) ① 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기초조사(이하 “농촌특화지구계획기초조사”라 한다)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계획수립권자(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농촌특화지구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립·변경하려는 농촌특화지구계획의 내용
2. 농촌특화지구계획기초조사의 결과(농촌특화지구계획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결과 및 지방의회의견
4.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같은 항 단서에 따라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를 대신하는 조직을 포함한다)의 심의 결과
5. 그 밖에 농촌특화지구계획의 수립·변경의 승인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③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기본방침 또는 기본계획이 변경되어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 농촌특화지구의 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4. 총사업비를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5. 그 밖에 농촌특화지구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④ 계획수립권자가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농촌특화지구계획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촌특화지구계획의 수립·변경 및 승인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중전의 제8조)제2항 중 “광역시”를 “통합특별시·광역시”로,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법 제13조제3항”을 “법 제13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④ 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농촌특화지구의 위치·면적 등과 해제 사유를 고시하고, 그 사실을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촌특화지구 도서 등의 작성방법과 지정 및 지정해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중전의 제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광역시”를 “통합특별시·광역시”로, “이하 같다)”를 “이하 같다)·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2조(중전의 제11조)제1항, 제2항, 같은 조(중전의 제11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중전의 제11조) 제4항 중 “시장·군수”를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중 “법 제22조제2항제5호”를 “법 제22조제2항제5호 및 제5호의2”로 한다.

제14조(중전의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시장·군수”를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1조제2항”을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제15조(중전의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중전의 제14조) 제2항 중 “시장·군수”를 각각 “시장·군수·구청

장”으로 한다.

제18조(중전의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중전의 제17조) 제3항 중 “시장·군수”를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5장제21조를 제23조의2로 하고, 제19조를 제21조로 한다.

제6장제26조를 제28조로 하고, 제24조를 제26조로 하며, 제22조를 제24조로 하고, 제20조를 제22조로 하며,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과 규모에 관한 서류
2. 사업비 명세서
3. 시설물 배치도와 시설 현황도
4. 주요시설물 유지·관리계획서
5. 주요시설물 이관계획서
6. 준공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7. 시행 전후의 면적조서.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지적공부의 정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8.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시설물 등의 명세서

9. 법 제31조제1항 각 호와 관련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준공협약에 필요한 서류

②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공사 완료 사실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제4항에 따른 전문 검사기술을 가진 자가 해당 사업의 공사감리자와 같은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를 위탁해서는 아니 된다.

④ 법 제31조의2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검사기술을 가진 자”란 한국농어촌공사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말한다.

제20조(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이하 “중앙정책심의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정책심의회의 공동위원장은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이 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2.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

③ 중앙정책심의회의 위원은 농업·농촌·토지 분야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

년으로 한다.

⑤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중앙정책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⑥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항제1호의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중앙정책심의회는 이 영 시행일부터 4년간 존속한다.

⑧ 중앙정책심의회 회의는 제2항제1호의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⑨ 중앙정책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 제25조 및 제27조를 각각 제25조, 제27조 및 제29조로 하고,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의 지정요건 등) ①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또는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이하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농촌 지역개발 및 재생 지원 분야의 전문인력이 3명 이상 있어야 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

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공간연구원

4.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국립농업과학원

③ 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또는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요건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연구원

5. 그 밖에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또는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추고 있다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제23조의2(중전의 제21조)의 제목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의 지정 등)”을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지정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으로, “시장·군수”를 “시장·군수·구청장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군수는 제2항”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4항) 중 “시장·군수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제3항까지”를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6항) 중 “제1항”을 “제23조 및 제1항”으로 한다.

제26조(중전의 제24조)제1항 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28조(중전의 제26조) 제1항제1호 중 “기본계획기초조사 및 시행계획기초조사”를 “기본계획기초조사, 시행계획기초조사 및 농촌특화지구계획기초조사”로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 중 “농촌위해시설”을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4호다목 중 “농촌위해시설”을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로 한다.

라. 농촌마을보호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에 따른 취약지구를 연계하여 지정하는 것을 우선 검토할 것

별표 1 제5호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마을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마을 내 또는 인근에 지정할 수 있다.

별표 1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관농업지구”를 “농촌경관지구”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7조의2”를 “제8조”로 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

- 1) 경관작물(「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관작물을 말한다)을 집단화하여 재배하거나 혼작, 전통경작방식 등으로 동종·유사 작물을 집단화하여 재배하는 농경지 및 그 주변 지역으로서 농업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이 필요한 지역
- 2) 지형, 수변, 생태 등 농촌의 자연경관 또는 정주공간, 농업생산 기반, 농경문화 등 역사·문화적 특색이 있는 농촌의 생활경관으로서 보전·관리 및 형성이 필요한 지역

부 칙

이 영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① (생략)	제3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① (현행과 같음)
② 계획수립권자는 <u>법 제7조제4항</u> 후단에 따른 기초조사(이하 “기본계획기초조사”라 한다)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 <u>법 제7조제5항</u> ----- ----- ----- ----- ----- ----- --.
③ 계획수립권자는 <u>법 제7조제5항</u>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기본계획기초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계획수립권자가 해당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명칭 및 위탁한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③ ----- <u>법 제7조제6항</u> ----- ----- -----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 개최) ①·② (생략)	제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 개최) ①·② (현행과

③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5조제3항 각 호 또는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승인) ① 계획수립권자(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4. (생략)

5.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의 승인을 위하여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획수립권자(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에게 제출 서류의 보완이나 관

같음)

③ -----

----- 제5조제3항 각 호, 제7조제2항 -----
----- 제7조의2제3항 -----.

제5조(기본계획의 승인) ① ----

----- 통합
특별시장, 광역시장-----
-----.

1. ~ 4. (현행과 같음)

5. -----
----- 통합특별
시장, 광역시장-----

--

②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런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제7조(시행계획의 승인) ① 계획 수립권자(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4. (생략)

5.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의 승인을 위하여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특별자치시장이 시행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의견(농촌특화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들을 수 있다.

③ (생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시행계획의 승인) ① -----

----- 통합
특별시장, 광역시장-----
-----.

1. ~ 4. (현행과 같음)

5. -----
----- 통합특
별시장, 광역시장-----

--

<삭제>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계획수립권자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의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③ ----- 법 제11조제4항-----

④ ----- 제3항-----

제7조의2(농촌특화지구계획의 수립·변경 등)

① 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기초조사(이하 “농촌특화지구계획기초조사”라 한다)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계획수립권자(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농촌특화지구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통합특별시장, 광

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립·변경하려는 농촌특화지구계획의 내용

2. 농촌특화지구계획기초조사의 결과(농촌특화지구계획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결과 및 지방의회 의견

4.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같은 항 단서에 따라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 기능을 대신하는 조직을 포함한다)의 심의 결과

5. 그 밖에 농촌특화지구계획의 수립·변경의 승인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말한다.

1. 제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기본방침 또는 기본계획이
변경되어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 농촌특화지구의 면적을 100
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
경하는 경우

4. 총사업비를 100분의 10 미만
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5. 그 밖에 농촌특화지구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변
경하는 경우

④ 계획수립권자가 법 제11조의
2제3항에 따라 농촌특화지구계
획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
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농촌특화지구계

제7조의2 (생략)

제8조(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등)

① (생략)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 13조제2항에 따라 농촌특화지구의 총면적과 총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와 시·군(광역시의 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농촌특화지구의 도서(圖書)는 축척 1천분의 1 또는 축척 5천분의 1 (축척 1천분의 1 또는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가 간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수치지형도를

획의 수립·변경 및 승인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 (현행 제7조의2와 같음)

제9조(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통합특별시·광역시-----

----- 포함한다.
이하 같다)·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

③ 법 제13조제4항-----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농촌특화지구를 명시한 도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지형도가 간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도·해저지형도 등의 도면으로 지형도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촌특화지구 지정과 도서 등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제9조(주민제안의 제안요건 및 처리 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필요한 사업 또는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을 제안

-----.

-----.

④ 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농촌특화지구의 위치·면적 등과 해제사유를 고시하고, 그 사실을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촌특화지구 도서 등의 작성방법과 지정 및 지정해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주민제안의 제안요건 및 처리 절차) ① -----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안서를 시장·군
수(광역시의 군수와 「제주특별
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
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 또는 특별자치시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을 제안하
려면 대상 토지 면적(국유지·
공유지는 제외한다)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2. (생략)

②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서를 제
출받은 경우에는 그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제안
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
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
유로 그 기간 내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생략)

---통합특별시·광역시---

--. 이하 같다)·구청장(자치구
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1.·2. (현행과 같음)

② 시장·군수·구청장 -----

③ (현행과 같음)

③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주민협정에 대한 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통

③ 시장 · 군수 · 구청장 -----

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은 인가 여부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정을 인가했을 때에는 그 내용(법 제22조제2항제5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제12조 (생략)

제13조(주민협정의 변경 및 폐지 등) ① 협정체결자 또는 주민협의회 대표자는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주민협정 변경·폐지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3. (생략)

_____ . _____

_____ . _____

④ 시장 · 군수 · 구청장 -----

--- 법 제22조제2항제5호 및 제
5호의2-----

--.

제13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illegible]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주민협정 변경·폐지의 인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주민협정 변경·폐지의 인가 신청에 대한 자료 보완, 처리기한 및 인가 내용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④ (생략)

제14조(주민협정의 이행 지원) ①

협정체결자 또는 주민협의회 대표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주민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4. (생략)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제1

4. ----- 시장·군수·구청장

② -----

---- 제12조제2항-----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주민협정의 이행 지원) ①

시장·군수·구청장 -----
-----.

1. ~ 4. (현행과 같음)

5. -----
시장·군수·구청장 -----

--

② ----- 시장·군수·구청장 -----

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원 여부를 해당 협정체결자 또는 주민협의회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5조 · 제16조 (생 략)

제17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의 승인)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생 략)

-----.

제16조 · 제17조 (현행 제15조 및 제16조와 같음)

제18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의 승인) ① -----

----- 시장·군수·구청장 -----
-----.

1. ~ 4. (현행과 같음)

5. ----- 시장·군수·구청장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 설>

③ 시장·군수·구청장 -----

-----.

제19조(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과 규모에 관한 서류

2. 사업비 명세서

3. 시설물 배치도와 시설 현황도

4. 주요시설물 유지·관리계획서

5. 주요시설물 이관계획서

6. 준공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7. 시행 전후의 면적조서.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지적공부의 정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신 설>

8.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될 토지·시설물 등의 명세서

9. 법 제31조제1항 각 호와 관련
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준공협의를에 필요한 서류

②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공사 완료 사실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제4항
에 따른 전문 검사기술을 가진
자가 해당 사업의 공사감리자와
같은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를
위탁해서는 아니 된다.

④ 법 제31조의2제6항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검사기
술을 가진 자”란 한국농어촌공
사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
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
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말
한다.

제20조(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
의 구성 등) ① 법 제32조제1항

에 따른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이하 “중앙정책심의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정책심의회는 공동위원장은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이 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2.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

③ 중앙정책심의회는 농업·농촌·토지 분야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중앙정책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⑥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항제1호의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
의 기능을 대신하는 위원회)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중앙농촌공간정
책심회의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기구는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2조에 따라 농림축산
식품부에 설치되는 정책자문위
원회로 한다.

제19조 (생 략)

제20조 (생 략)

<신 설>

⑦ 중앙정책심의회는 이 영 시
행일부터 4년간 존속한다.

⑧ 중앙정책심의회 회의는 제
2항제1호의 공동위원장이 소집
한다.

⑨ 중앙정책심의회 회의는 재
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중앙정책심의회
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다.

<삭 제>

제21조 (현행 제19조와 같음)

제22조 (현행 제20조와 같음)

제23조(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의
지정요건 등) ① 법 제35조제1

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또는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이하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농촌지역개발 및 재생 지원 분야의 전문인력이 3명 이상 있어야 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공간연구원

4.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국립농업과학원

③ 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u>제21조(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u>	<u>따라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또는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요건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한다.</u> <u>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u> <u>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u> <u>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u> <u>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연구원</u> <u>5. 그 밖에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또는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추고 있다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u> <u>제23조의2(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지정 신청 등) <삭 제></u>
--	---

촌공간중앙지원기관, 농촌공간
광역지원기관 또는 농촌공간기
초지원기관(이하 “농촌공간정
책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
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농촌 지역개발 및 재생 지원
분야의 전문인력이 3명 이상
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기관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
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
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농촌공간광역
지원기관 또는 농촌공간기
초지원기관만 해당한다)

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
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

방연구원(농촌공간광역지
원기관 또는 농촌공간기초
지원기관만 해당한다)

마. 그 밖에 법 제35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업무 수
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조
직·인력을 갖추고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
공간광역지원기관 또는 농
촌공간기초지원기관의 경
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인정하는
기관

②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
지의 규정에 따라 농촌공간정책
지원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
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
품부장관, 시·도지사(광역시
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
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
다)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
해야 한다.

1. ~ 5. (생략)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

① -----

-----통합특
별시장, 광역시장-----

----- 시장·군수·구청장-----
-----.

1. ~ 5. (현행과 같음)

② -----

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라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2. (생략)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해야 한다.

⑤ (생략)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23조 (생략)

----- 시장·군수·구청장
은 제1항-----

1. 2. (현행과 같음)

③ -----
----- 시장·군수·구청장
은 ----- 제3항까지의 규정

④ (현행 제5항과 같음)

⑤ 제23조 및 제1항-----

-----.

제24조·제25조 (현행 제22조 및 제23조와 같음)

<u>제24조</u>(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협정의 이행 지원에 관한 권한을 특별자치시장 또는 <u>시장·군수</u>에게 위임한다. ②·③ (생략) <u>제25조</u> (생략) <u>제26조</u>(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 구축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이하 “공간종합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침기초조사, <u>기본계획기초조사 및 시행계획기초조사의 내용</u> 2. ~ 5. (생략) ②·③ (생략) <u>제27조</u> (생략)	<u>제26조</u>(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 ----- ----- ----- <u>시장·군수·구청장</u> -----. ②·③ (현행과 같음) <u>제27조</u> (현행 제25조와 같음) <u>제28조</u>(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 구축 등) ① ----- ----- ----- -----. 1. ----- <u>기본계획기초조사, 시행계획기초조사 및 농촌특화지구계획기초조사</u> ----- 2. ~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u>제29조</u> (현행 제27조와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	
연 락 처	(044) 201 - 1558